GCF UN산하 국제환경단체 (비영리단체)) 면세 매출

호텔에서 GCF 행사 매출이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 구분을 제 24조 (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)에 해야 할지 면세사업매출로 해야할지 면세매출 구분 기준에 대 해 문의 드립니다.

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 규정되어 있는데, 귀사가 공급하 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하지만 과세용역의 경우라도 귀사가 질의에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영화티켓 부가세 문의

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영화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이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 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
영화 티켓의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입장권 등은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
당직비 비과세 관련

당직비 비과세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. 당직비를 비과세하려면 1. 사규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하고 2. 사회통념상 타당하다

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

당직비에 대해 사규에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, 지급액은 "별도기안" 참 고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,

금액은 평일 20만원 / 주말 40만원으로 "별도기안"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과별(부서 별)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.

 $2023 \cdot 03 \cdot 29$ www.eAnSe.com 5 "별도기안"으로 대체되어 구체적인 금액이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괜찮은지 / 당직비 지급기준과 금액이 과별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/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하도 내에 포한되는지 궁금하며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.

일직료,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회사에 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. 별도기안 등에 표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, 과별 차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. 다. 또한 사회통념상의 범위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경우 해당 결정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추후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 지고 금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.

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회계처리

인터넷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..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고객들에 게 제공하면(이벤트성으로 당사계약과 상관없이 진행됨), ~월분 쿠폰으로 마이너스 세금계 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(사실상 인터넷쇼핑몰에서), 이와관련해서 계정과목(회계처리)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.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?

최초 공급시점부터 할인해서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데, 귀사 가 발급한 쿠폰이 아니고 판매대행업체가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감액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